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398
----------	------

제출년월일 : 2005.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90년 1월 설치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이 불투명하여 관계법령과 회계 결산 감사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사업의 청산 방안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폐지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취서 : 별첨

○ 지방공기업법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10.18 ~ 2005.10.28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2006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이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소관 실·과		도시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김 준 연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개발담당 이 태 석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동 욱 (행정 27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9호]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야 한다. <개정 1992.12.8>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1990.09.17	조례제0336호
개정	1991.03.19	조례제0379호
개정	1992.06.09	조례제0455호
개정	1999.01.13	조례제0811호
개정	1999.10.09	조례제0872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1.11.29	조례제0991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는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1.03.19 조례제0379호>

1. 주택건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산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산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업무담당과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2001.11.29>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1.03.19>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시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위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1.03.19>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하거나 출자금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상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상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19 조례 제0379호>

제13조(수익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1991.03.19 조례>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제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에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1991.03.19>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하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된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한다.

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2.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